

## 업계소식 – 2015 년- 8 월-13 일-유기발광다이오드 (LED)

위원회에서 미용사/피부 미용사에게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. LED 기구 사용을 고려 중인 면허 소지자가 있다면, 그 기구의 사용이 위원회의 법규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.

면허 소지자가 시행 할 수 있거나 시행할 수 없는 서비스를 법규정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위원회의 관행이 아닙니다. 캘리포니아 규정집 991 항 16 편은 (2015 년 7 월 1 일 이전까지) LED 서비스를 금지했었습니다. 위원회는 991 항을 크게 변경하였으며, 이제 미용사 / 피부 미용사는 LED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사용 목적은 반드시 피부 외양의 개선 (미용)이어야 합니다. 위원회는 대다수의 LED 서비스가 미용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.

캘리포니아 규정집 9991 항 (2015 년 7 월 1 일 발효):

### § 991. 침습적 시술:

(a) 면허 소지자와 학생은 고객의 표피 이상의 피부를 제거, 파괴, 절개, 또는 피어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, 기기, 기계, 또는 그 외 다른 기술, 또는 이상의 것들의 조합을 사용 할 수 없다. 이와 같은 행위는 침습적 시술로 간주될 것이다.

(b) 침습적 시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:

- (1) 근육을 눈에 띄게 수축시키는 전기의 시술.
- (2) 구입하려면 의료면허가 필요한 국부 로션, 크림, 세럼 또는 이 외 다른 물질의 사용.
- (3) 전기분해 요법 바늘/와이어 필라멘트를 제외한 금속 바늘을 피부에 삽입하는 행위.
- (4) 표피 아래 층의 피부를 긁어내거나 벗겨내는 행위.
- (5) 면도날이 끝에 달린 도구나 비슷한 도구를 사용해서 피부를 제거하는 행위.

참고: 인용 근거: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. 참조: 사업 및 전문업법 7312(e) 항 7316 항, 7320 항, 7320.1 항.